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1월 28일부터 예정금액 5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실시하는 사업주는 현장 내에 화장실과 음수대, 식당, 탈의실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한다. 또 예정금액 30억원 이상 건설공사현장에는 샤워실과 휴게실을 설치해 건설근로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지난 해 7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최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해 12월 말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후 일부 개정작업에 들어가 1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건설근로자들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1월 28일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 편의시설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는 건설현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건설공사 설계기준에는 현장의 투입인력에 따라 화장실과 식당 등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이 정해져 있으나 일부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건설근로자들이 열악한 근로환경에 노출되고 있어 이번에 개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예정금액 5천만원 이상 현장에는

화장실과 음수대, 식당, 탈의실을 설치하도록 하되 현장과 화장실 사이의 거리 및 화장실 칸막이 높이, 식당 수용규모, 탈의실의 보관함 성능 등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예정금액 30억원 이상 현장에는 샤워실과 휴게실을 마련하되 근로자 5%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샤워실 규모를 정하는 등 설치기준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화장실·음수대·식당·탈의실 의무규정을 어기는 경우에는 500만원, 샤워실·휴게실 의무규정을 어기는 경우에는 4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내용도 시행령·규칙에 담았다.

노동부는 "이미 건설현장에서는 화장실과 음수대 등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설치해 이용하고 있지만 일부 현장의 경우 적절하게 편의시설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거나 설치만 해놓고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며 "때로는 이런 까닭으로 노사간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건설공사 효율을 떨어뜨리는 일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설계기준에 편의시설 설치기준 등이 정해져 있어 이미 공사비에 비용이 반영돼 시행규칙에서 제시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갖추는 데 큰 비용이 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령 (안)
<p>〈신 설〉</p> <p>제4조의2(퇴직공제의 의무가입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p> <p>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 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p> <p>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p>	<p>제3조의2(고용 관련 편의시설 설치 등의 의무 공사의 규모) 법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라 화장실·식당·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하는 건설공사 규모는 편의시설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p> <p>1. 화장실, 음수대, 식당 및 탈의실은 공사예정금액 5천만원 이상의 공사</p> <p>2. 샤워실 및 휴게실은 공사예정금액 30억원 이상의 공사</p>
<p>제4조의2(퇴직공제의 의무가입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 법 제10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p> <p>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 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p> <p>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p>	<p>제4조의2(퇴직공제의 의무가입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p> <p>_____</p> <p>_____</p> <p style="text-align: center;">「소방시설공사업법」</p> <p>_____</p> <p>_____</p> <p>1. _____</p> <p style="text-align: center;">5억원 이상</p> <p>2. _____ 법인(당해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제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 _____ 5억원 이상인 공사</p>
<p>제4조의3(공제회의 승인기준) 법 제10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보기 위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가 원수급인의 신청을 승인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일 것</p> <p>2. ~ 4. (생략)</p>	<p>제4조의3(공제회의 승인기준) _____</p> <p>_____</p> <p>_____</p> <p>1. _____</p> <p style="text-align: center;">「소방시설공사업법」</p> <p>_____</p> <p>2. ~ 4. (현행과 같음)</p>
<p>제4조의4(퇴직공제 임의가입의 요건)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주"라 함은 「건</p>	<p>제4조의4(퇴직공제 임의가입의 요건) _____</p> <p>_____</p>

현 행	개 정 령 (안)
<p>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를 말한다.</p> <p>제4조의5 (건설공사의 개시일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건설공사의 개시일"이라 함은 그 공사의 실제 착공일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의2제3항에서 "건설공사의 완공일"이라 함은 그 공사의 실제 종료일을 말한다.</p> <p>&lt;신 설&gt;</p> <p>제1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과태료의 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④ &lt;생략&gt;</p>	<p>_____ 「소방시설공사업법」 _____                      _____.</p> <p>제4조의5 (건설공사의 개시일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건설공사의 사업개시일" _____                      _____.                      ②법 제10조제5항에서 "건설공사 완공일" _____                      _____.</p> <p>제8조의2(부정행위에 따른 배액의 반환) 법 제16조제1항에 의한 배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은 퇴직금 제금으로 지급받은 금액 중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으로 한다.</p> <p>제1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제4항에 _____                      _____                      _____.                      ②~④ &lt;생략&gt;</p>



고사성어

馬耳東風(말 마, 귀 이, 동녘 동, 바람 풍)

‘말의 귀에 동풍이 불어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뜻으로, 남의 의견이나 충고의 말을 귀담아듣지 아니하고 흘려 버림을 이르는 말.

당나라의 대시인 이백(李白)이 벗 왕십이로부터 ‘한야독작유회(寒夜獨酌有懷-추운 방에 홀로 술잔을 기울이며 느낀 바 있어서)’라는 시 한 수를 받아 이에 답하여 ‘답왕십이한야독작유회(答王十二寒夜獨酌有懷)’라는 시를 보냈는데 ‘마이동풍’은 이 시의 마지막 구절에 나온다.

장시(長詩)인 이 시에서 이백은 “우리네 시인들이 아무리 좋은 시를 짓더라도 이 세상 속물들은 그것을 알아주지 않는다”며 울분을 터뜨리고 다음과 같이 맺고 있다.

世人聞此皆掉頭(세인문차개도두) 세인들은 이 말을 듣고 모두 머리를 흔드네  
 有如東風射馬耳(유여동풍사마이) 마치 동풍에 쏘인 말의 귀처럼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령 (안)
<p>〈신 설〉</p> <p>제5조 (퇴직공제의 가입) ①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퇴직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1. ~ 2. (생략)</p> <p>② (생략)</p>	<p>제3조의2(고용 관련 편의시설 설치 또는 이용 조치의 기준) 법 제7조의 2에 따른 고용 관련 편의시설 설치 또는 이용조치에 관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p> <p>제5조(퇴직공제에의 가입)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p> <p>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1. ~ 2.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신 설〉</p>	<p>제5조의4(퇴직공제관계의 성립신고) ① 법 제10조의4에 따라 공제회에 퇴직공제관계의 성립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건설근로자퇴직공제관계성립신고서에 제5조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사업주에 대하여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사실의 확인을 할 수 있다.</p>
<p>〈신 설〉</p> <p>제6조 (퇴직공제가입자증의 교부) ① 공제회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업주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자증(이하 "공제가입</p>	<p>제5조의5(성립신고서 변경사항의 신고) 퇴직공제관계의 성립을 신고한 사업주는 제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별지 제4호의3 서식의 퇴직공제성립신고서기재사항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p> <p>제6조(퇴직공제가입자증의 교부) ① 공제회는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4 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신청서 또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받은</p> <p>_____</p> <p>_____</p> <p>_____</p>



현 행	개 정 령 (안)
<p>&lt;신 설&gt;</p>	<p>여 2인 이상의 자가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액의 산정에 있어 이를 하나의 신고로 본다. 이 경우 포상금은 부정행위의 적발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자에게 적절하게 배분하여 지급하되,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p> <p>제15조의5(포상금의 지급제한) ①제15조의2 제2항에 따라 신고받은 부정행위의 내용이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②공제회 또는 관계행정기관이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신고받은 부정행위를 신고 전 알게 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발견·신고한 경우</li> <li>2. 부정행위를 한 자가 신고한 경우</li> <li>3.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li> <li>4. 부정행위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부정행위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li> <li>5.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li> </ol>



### 소주보다 맥주가 뱃살이 더 찐다?

뱃살, 즉 복부 비만은 운동 부족에 의해서만 생기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음주도 뱃살을 불리는 데 특특히 한몫을 한다. 버펄로 대학의 돈(Joan Dorn)박사가 2,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술을 마시는 방법과 술의 종류에 따라 뱃살이 가장 많이 붙어날 것 같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다. 술을 조금씩 훌쩍훌쩍 마시는 사람들은 설사 매일 마시더라도 뱃살이 별로 늘지 않았다. 반면, 음주 횟수는 적되 일단 마셨다 하면 3~4잔 이상씩 연거푸 폭음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뱃살이 가장 많이 늘어났던 것이다.

주나 보드카, 소주 등과 같이 독한 술을 많이 마실수록 뱃살이 가장 많이 붙어났고, 포도주가 가장 덜 붙어났다. 통념과는 달리 맥주는 뱃살 증가와는 별 상관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계에서 1인당 맥주 소비량이 가장 많은 체코의 경우 배가 나온 사람들이 오히려 적은 편이다. 실제로 영국 런던대학 연구팀이 체코 여성 1,098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본 결과를 습관적으로 마시는 여성들은 안 마시는 여성들보다 오히려 체중이 약간이나마 덜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른 술은 많이 마실수록 남녀를 불문하고 뱃살을 늘어나도록 하는 게 틀림없다.

또한, 어떤 술을 마시느냐도 뱃살에 영향을 미친다. 양